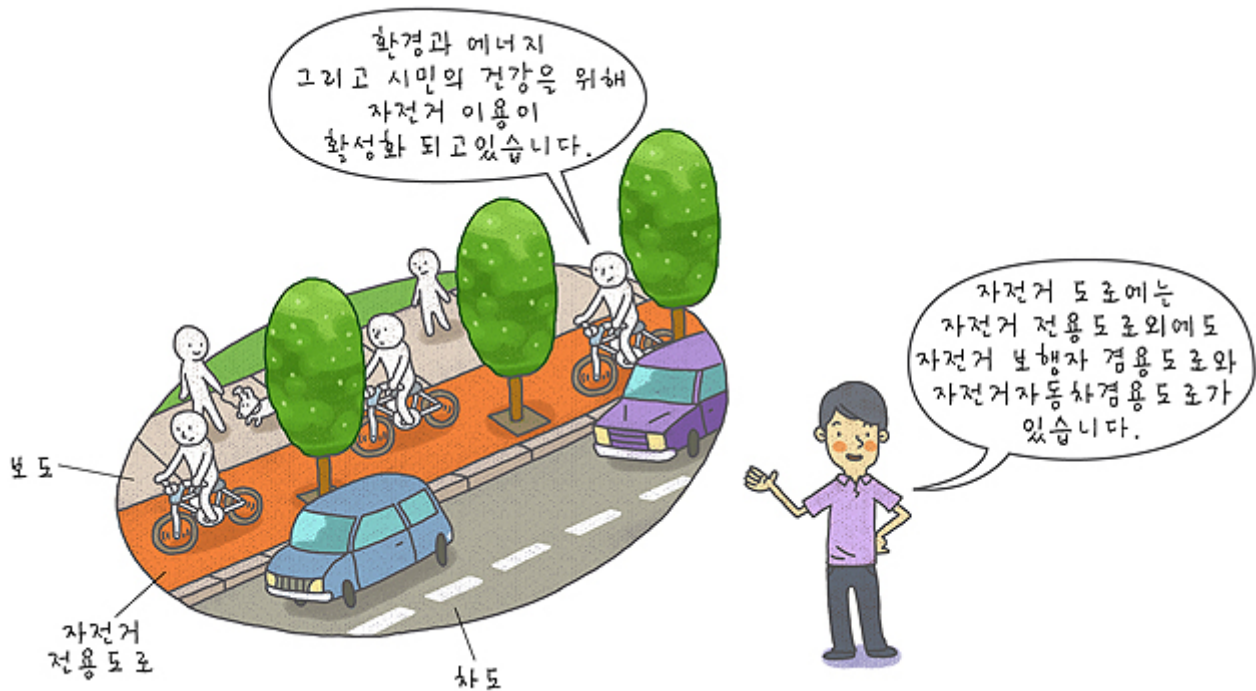


자전거전용도로

자전거만이通行할 수 있도록 분리대·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



용어설명

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「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정의되는 자전거만이通行할 수 있도록 구분 설치한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. 「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을 자전거도로, 자전거주차장, 기타 자전거(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전거도로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. 1. 자전거전용도로 : 자전거만이通行할 수 있도록 분리대, 경계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.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: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通行할 수 있도록 분리대, 경계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. 자전거전용차로 :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通行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通行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「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등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시설의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계획,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,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·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·확장 및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. 「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한다. 도시계획시설로서 자전거전용도로는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중 하나로 폭 1.5m(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.2m)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通行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로 정의된다. 도시계획시설로서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 및 설치 기준은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」을 따라야 한다.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1. 통근·통학·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할 것 2. 자전거전용도로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서로 연계되도록 설치할 것 3. 학교·공공청사·도서관·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1.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, 저류·침투조

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,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자전거전용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2.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.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의 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나. 자전거전용차로의 표지를 설치하고,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 3.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. 자전거전용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것 나.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할 경우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전용도로 우선구조로 설치할 것

관련법규

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·시설기준에관한규칙,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
관련용어

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도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자전거보행자검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검용도로

참고

-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
From:
<https://www.conschoo.co.kr/> - DB World

Permanent link:
<https://www.conschoo.co.kr/%EA%B1%B4%EC%84%A4%EC%9A%A9%EC%96%B4/%EC%9E%90%EC%A0%84%EA%B1%B0%EC%A0%84%EC%9A%A9%EB%8F%84%EB%A1%9C>

Last update: 2016/04/07 03:59

